# FOCUS

## 레미콘 현장배치 플랜트설치지침 개정안에 대한 건의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7월 30일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실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현장배치플랜트설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데 대하여 레미콘업체의 영업권침해로 경영악화에 의한 생존권 위협, 이중투자로 인한 국가경제의 손실, 환경훼손 및 공해발생등의 문제점을 제시, 자가배쳐플랜트설치 확대방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다.

건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 1996년 7월말 현재 전국의 레미콘공장수는 66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년간 레미콘 생산능력은 2억 7천만m³(하루8시간, 년간 250일 가동기준)를 초과하고 있어 연간 레미콘 수요인 1억 2천만m³ 내외를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건설현장의 자체배쳐플랜트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레미콘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국가경제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로 공사현장의 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데에는 최소 약 7억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될 뿐만아니라 공사가 완공되면 현장배치플랜트를 철거하여야 하므로 이중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경제 손실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므로 현장자가배치플랜트 설치완화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다.

- 폐기레미콘, 슬럿지(sludge), 원재료(시멘트,모래입자)의 비산먼지 등의 처리에 있어 전문적인 장비를 설치한 레미콘공장 보다 열악한 상태이므로 환경훼손 및 공해유발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 또한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면 "200m²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 이상인 공장을 신설(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레미콘공장을 신설할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면적 3,000-5,000m², 대지면적 10,000-20,000m²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자체 간이배쳐플랜트는 정상적인 레미콘공장의1/10 규모에도 못미치는 200m²이하로 건축면적을 신고하여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고 있는 바, 실제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공장으로 등록을 하지않은 불법공장일 확률이 높으며, 만약 200m²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 전문적으로 레미콘을 생산하는 레미콘공장에서는 생산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원자재관리시설, 시험시설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대부분의 레미콘업체는 정부로부터 KS를 득하여 운영해오고 있는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KS제품을 평가절하하고 이동식 플랜트에서 제조되는 비KS제품의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KS표시품 우선구매를 권장해 온 정부의 산업표준화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 건설회사에서 설치하는 배치플랜트는 이동식의 간이플랜트로서 레미콘공장의 고정식에 비해 계량의 정밀도, 생산용량, 혼합성능이 현저히 뒤떨어지며, 레미콘을 생산함에 있어 인근 레미콘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자재와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게 되므로 레미콘공장에 비해 품질이 향상될 여지는 全無하고,

- 건설현장의 간이배치플랜트는 한시적으로 레미콘을 생산하여 건물을 지은후 곧바로 철거되어 없어지므로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레미콘공장과는 달리 하자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도 극히 불리하며 부실 및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 대책을 위한 레미콘현장 배치플랜트설치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완화는 건설업체나 레미콘업체간에 서로 상반된 경제적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양업계의 협조 노력만이 해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계획시에는 사전에 인근 기존레미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간이배치플랜트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이중투자가 최대한 억제되어 국가건설이익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의 건의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8월3일동 지침의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조회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 충분한 의견을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회신하였다.

## 40mm골재 레미콘규격 생산 불가에 대한 협조요청 및 규격삭제 건의

최근 골재업체에서는 생산시스템 미비와 채산성의 이유를 들어 40mm 골재 생산이 불가함을 레미콘업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8월 13일 건설공사관련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종합건설본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40mm 골재 레미콘 규격이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 생산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시공업체에서 40mm골재 규격 레미콘을 주문하지 않도록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정부기관에 40mm골재 생산이 불가능함으로 기존에 있는 40mm 레미콘 규격은 사문화된 규격이라 판단하여 건설교통부, 조달청, 국립기술품질원에 40mm 레미콘 규격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건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 골재 생산업체에서는 생산시스템의 미비와 채산성의 이유를 들어 40mm골재 생산을 중단하였고, 레미콘업체에서 특별히 주문을 요청해도 생산을 하지아니하여 40mm골재 레미콘규격 생산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 최근의 건설공사는 장대화 거대화 지하화 되어 대부분의 건설 공사가 펌프카를 사용하고 있는데, 40mm골재 레미콘규격을 사용하게 되면 펌프카의 관이 막히는 등 장비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40mm 규격의 레미콘 타설을 기피하고 있다.

- 또한 40mm골재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인해 레미콘업계는 25mm골재로 대치하여도 품질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40mm골재 규격의 레미콘 대신 25mm규격 레미콘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1m$^3$에 1,5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40mm 골재를 의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KS규격 및 건설관련시방서에서 40mm골재 레미콘규격을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

통상산업부는 96년 7월 19일 공업배치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발표하였다. 개정이유를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1995. 12. 29)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의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공업배치 및 공업단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구성, 회의의 운영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 정함 (영제7조의 2, 제 7조의 6항)

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영 제 19조의 2)

다. 수도권의 과밀억제 지역안에서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한도를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내에서 1천제곱미터 이내로,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에서 3천제곱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과밀억제지역안의 공업지역에서는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설 및 증설 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장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함(영 제 26조 제 3호)

라. 종전에는 자연보전지역안에 있는 기타지역(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형업종의 공장도 신설등이 금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지아니하는 공장으로서 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는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하였다.

## 건설업법 시행령 공포

건설교통부는 96년 7월 26일 건설업법시행령을 개정 · 공포하였다. 이 시행령에서는 WTO협정에 의하여 올해부터 외국건설업체에게 건설업면허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한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건설업법의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에 본사를 둔 외국업체가 건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면허 중 기술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상사주재 ·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외국인 기술자는 한국건설인기술협회에 학력 경력을 신고하여 기술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자본금은 외국에 소재한 본사의 자금을 인정하되, 국내업체와 만찬가지로 건설공제조합에 일정한 구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여야 한다.

이들은 상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하되 외국인인 기술자 및 임원의 국내체류자격과 영업소의 설치는 면허취득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갖추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업 경험이 없는 업체가 건설업에 참여하여 도산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공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도 전문건설업이나 주택사업등 다른업종의 건설업을 1년이상 영위하거나 건설업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이 규정은 97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에 의한 보증제도를 완비할 98년 12월 31일 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소건설업체의 기술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업면허시 건설업자가 보유하거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만으로 인정하던 것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학력 · 경력에 의해 건설기술자로 신고하여 기술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학력 · 경력 기술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다.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안) 입법예고

앞으로 KS표시허가가 공장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시판품 조사면제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부실공장 심사를 한 표준화능력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KS시허가 신청이 한국표준협회 또는 국립기술품질원으로 이관된다. 통상산업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운용요강 제정안을 입법예고('96.8.19),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산부는 각 지방중소기업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 KS표시허가를 한국표준협회의 13개 지부나 국립기술품질원에 신청하도록 신청기관을 변경했다. 이와함께 각 생산업체로 조직된 KS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공장심사를 한 경우 검사를 면제해 주던 것을 국립기술품질원이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소속 회원에 대해서는 시판품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국립기술품질원은 실태조사에 따른 판정결과를 관할 시도에 통보,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면제토록 절차를 강화했다. 그동안 불량 KS 표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각 생산 품목별 KS협의회가 시판품 조사를 자율적으로 실시,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국립기술품질원에 통보하도록 했으나, 일부 협의회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자율검사의 공정성이 의문시 돼왔다. 따라서 제품의 시판품조사에 따른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등으로 분류된 규격미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요건은 품질원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통산부는 표준화능력기관으로 지정된 건자재시험연구원등 12개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장심사등 위탁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심사원에만 대해서 처벌하던 것을 당해기관으로 시정조치 대상을 변경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KS표시허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평가기관이 법 또는 규칙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1년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통상산업부는 현재 표준협회만 실시하고 있는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을 경쟁체제로 전환,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의무와 지정취소에 관련한 세부규정을 신설했다.

## 하도급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原·受給사업자간 공사하도급계약 체결때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을,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이행을 각각 보증토록 의무화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엔 형벌대신 하도급 거래금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연간매출액만으로 단일화된다. 이와함께 레미콘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해 하도급법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법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법의 실효성 제고 및 법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등과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의결한 뒤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내년 3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늦어도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위탁시 원사업자인 일반건설업체는 수급사업자인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열화 실적 및 재무구조가 양호하거나, 하도급 공사금액이 일정한 규모이하인 경우 보증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 보증은 현금 또는 지방채, 은행 지급보증서로 하도

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미지급, 서면 미교부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 거래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 금전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지나친 형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시정조치 불이행죄, 허위감정죄를 제외한 형벌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측은 법위반이 중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법위반사실 공표, 영업정지요청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형사처벌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중소기업간의 제조위탁시 원사업자 제외 요건으로 규정돼 있는 상시 종업원수 연간 매출액중 상시 종업원수 를 삭제, 연간 매출액만으로 중소기업체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조 위탁대상인 레미콘의 경우 수급과정에 따라 지역별로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역별 차등 적용 근거를 법에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운영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또 선급금 지급때 어음할인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현행 선급금 지급조항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선급금, 하도급대금 및 관세등 환급금에 대해서만 지연 이자조항을 뒀으나 부당감액 금지,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사자간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장기계약의 경우 기성금에 대해서 이자지급 및 어음 할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약관심사자문위원회와 유사한 하도급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제조위탁의 경우도 건설위탁과 마찬가지로 준공금 및 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96.8.29) 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비롯한 불량자재를 반납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시험장비를 운용하는 비용등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구조물의 안전비용 등을 건설공사비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구체적인 추가 계상비율을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해 내년부터 공공건설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 실시가 의무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비는 시험실시에 들어가는 직접비용만 반영돼었고,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소요비용만이 반영되는 등 그 비율이 선진국의 2-4%에 훨씬 못미치는 0.3%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완벽한 품질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레미콘이나 바닷모래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 시험을 생산자나 판매자가 직접 실시하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국공립시험기관등 제 3자가 시행토록 해 시험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토록 하고 불량자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청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자재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가 정한 표준자재를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발주로 총괄조정이 어려워 품질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기 소방등 설비분야에 대해 책임감리원에게 총괄감리권한을 줘 필요할 경우 설비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도 가능케 했다.

## 시멘트 유통기지 확충 시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부연구원에 의하면 현재 시멘트의 수급 구조는 단순히 계절적 수

요증감에 맞춰 동절기 및 장마철과 같은 비수기에 비축·저장한 후 봄가을 성수기의 수급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비수기에 비축물량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수기에 들어 수급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시멘트 수급 능력을 크게 확충하지 않으면서 성수기의 시멘트 수요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수기에 시멘트를 충분히 비축·저장이 가능하도록 시멘트유통기지의 저장 능력을 크게 확충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시멘트 생산능력은 5천 6백만톤인데 오는 97년에는 성신양회에서 300만톤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98년부터 약 6천만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할 예정이나 시멘트업계에서는 더 이상의 생산능력 증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기지건설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어야 만이 향후 시멘트 수급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의 시멘트 유통시설은 분해공장 25개소, 포장공장 74개소, 유통사일로 304개소가 있으나 저장능력은 1.9%에 불과한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시멘트생산량 8천 685만톤이고 유통기지 591개소, 사일로 1천 374개소로서 저장능력이 생산량 대비 5%인 점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의 시멘트 유통 사일로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유통 사일로가 지역별로 수요에 적합하게 입지하지 못하므로 지역별 수용수준에 의거한 유통기지의 적절한 분산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멘트 유통기지의 확충에는 적정한 항만 또는 철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편이고 부지가 확보 된다하여도 분진 등 환경차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승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멘트 수급측면에서 볼 때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이미 생산된 포틀랜드 시멘트 크링커에 석고, 슬래그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이므로 시멘트공장의 크링커 생산량을 증강하지 않고도 시멘트 공급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슬래그가 포항과 광양에서 대량 생산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기에는 운송코스트가 너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레미콘 등 시멘트가 가공제품에 대량 이용될 수 있도록 기술규준의 정비 및 수요 촉진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시멘트 벌크화율은 현재 80%에 달하고 있으나 일본의 벌크화율은 90%를 넘고 있는 점을 감안, 벌크화율을 더욱 상승시킬 필요성이 있다. 벌크시멘트는 주로 레미콘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의 선행성이 있으며 포장시멘트는 미장용, 조적용으로 사용되므로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장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여 수급간의 시간적 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멘트 수송면을 보면 해상수송은 유통기지의 부족으로 수송물량을 늘리기 어렵고 철도 수송도 수송능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육로 수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철도 및 해상 수송은 비용이 저렴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의 수송은 현재 육로 중심의 소량 운반체계에서 벗어나 철도 선박을 이용한 대량 운반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 수송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수송량이 많은 역 구내에 대형 사일로의 설치를 통하여 시멘트 유통기지를 집단화하여 창고 기능을 강화하고 하적능력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 지속적인 화차의 증차와 함께 배차증대와 벌크화차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며 사유 화차 보유사의 우선 배차 및 운임 할인율 조정을 통하여 사유 화차의 증차도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상 수송 능력 확충을 위한 국적 취득조건부로 나용선 중고선의 도입을 지원하고 항만에 확충 및 연안해상 수송을 강화하기 위해 항구에 임해시멘트 유통기지 확충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 21C 시멘트 수요증대 대비, 설비 증설

최근 시멘트 업체들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설비 증설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2개 시멘트 메이커는 97-98년 완공 목표로 생산시설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 일부업체는 향후 시멘트 수요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조사한 후 증설 여부를 검토하였다.이처럼 시멘트 업계의 설비증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2000년대 초반까지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발맞춰 문화레저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주택보급률증가정책 등으로 시멘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신양회의 경우 단양공장에 총 3천 500억원을 투자, 오는 98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연간 330만톤 규모의 시멘트생산시설공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또 충북 청원군 부강면 연간 180만톤의 슬래그 시멘트공장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신양회의 공장 신 증설이 완공되면 현재의 700만톤 생산능력에서 시멘트 1천210만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총생산량의 18%를 점유, 시멘트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라시멘트의 경우 1천 600억원을 투입, 97년말 완공 목표로 연간 186만톤 규모의 시멘트 소성로 1기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증설이 완공되면 생산능력은 현재 480만톤에서 660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일부 시멘트업체들도 향후시멘트 수요 증가 추세에 대비, 생산설비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55억원 이상 정부공사 완전개방, 지역공동도급제 폐지

내년 1월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5백만 SDR(특별인출권 55억원)이상 물품 및 용역은 모두 국제입찰에 부쳐진다.

또 대규모 지역집단간의 공동도급이 없어지게 되므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내년 1월 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규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특례규칙 개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96.8,30) 했다.

재경원은 WTO(세계무역기구)정부조달협정으로 55억원(환율에 따라 매년조정)이상 공사, 1억5천만원이상 물품 및 용역이 개방대상이 됨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해 심사를 강화하면서 국내외 업체에 동등하게 입찰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지역별로 조달하는 물품 및 용역입찰에 대해 당해지역 소재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경원은 또 국제 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도급한도액 기준으로 1-7군으로 분류하는 제한제도군 대신 국내외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재무상태등을 종합심사해 5-6등급으로 분류, 입찰에 제한을 가하는 등급별 사전 심사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입찰자격을 공사별로 사전심사는 PQ 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대로 공사대금액 1백억원 이상인 22개 공종으로 유지하되 발주관서가 공사의 특성 규모등에 따라 이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번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PQ공사 및 턴키(설계 시공 일괄입찰)공사에만 허용하던 30대 그룹간 공동도급을 국제입찰 대상공사에서 모두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공동도급을 허용할 경우 당해지역의 1개이상 건설업체가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공사계약보증관련, 현행 연대보증인 입찰보증금외에 계약자가 보증보험 등에서 발급받은 공사이행 보증증권으로도 보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성금 지급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키로 하였다.

## 국내 진출 외국사 1백여개 달해

풍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대형업체들이 내년 1월부터 본격 개방될 국내 건설시장을 선점키 위해 대거 몰려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4년 민간건설시장이 개방된 후 외국건설업체의 국내진출이 크게 늘어 지난해 12월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업체는 무려 1백 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선점 경쟁 뿐만 아니라 국내대형업체들을 인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지분참여를 통한 합작형태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외국업체들은 시공분야 뿐만 아니라 국내업체들이 취약한 엔지니어링 부문 및 설계 감리용역에 까지 무차별식 침투를 감행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 외국업체중 이번 일반건설면허를 신청한 외국회사는 벡텔 인터내셜(미국), 플루워다이엘 이스턴(미국), 후지타(일본), 보비스아시아퍼시픽(싱가폴)중국건축공정총공사(중국) 등 5개사이며 특히 벡텔, 플라워, 보비스 3사는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여객사 신청공사에 국내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입찰에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품질관리비용 현실화

현재 시험·부문에 한해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되고 있는 각종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비가 빠르면 오는 98년부터 전체공사과정에 드는 품질관리 인건비는 물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등 부대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실화된다.

비용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일정비용을 차등화해 반영하되 토목과 건축등 공종별로도 구분돼 비율이 계상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 공사 품질관리비는 시험실시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을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시설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건설부가 계획중인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계상안의 주요골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산출을 공종 및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고 비용에는 품질관리자의 인건비외 품질관리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 외주업체에 대한 지도, 평가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건교부는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산업연구원 연구결과로 제시한 품질관리비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상비율을 도출, 최종안이 나오면 올 하반기중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이를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경원과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실제로 현실화된 품질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되는 시점은 빨라야 오는 98년이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품질관리연구회 모임에서 적정 품질관리비 계상안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계상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목공사의 경우 약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1.87% 500억원미만-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2.03%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2.81%가 적정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 건축공사는 500억원 이상일 때 1.25%, 100-500억원 공사에는 1.41%, 그 미만의 공사에는 2.21%가 적정 계상비율로 제시됐다. 그런데 현재도급액에 실제계상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비는 0.28%에 불과해 시공업체들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민간단체도 공신력 갖춘 자격증 발급 가능

내년부터 정부의 평가를 거친 각종 민간단체에서도 국가가 발급한 것과 동일한 공신력을 갖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자격증 발급을 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게

될 기구로 정부출연기관 형태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신설된다. 정부는 "신 직업 훈련체제구축 관련법제 · 정비방안"을 올정기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정비 방안은 국가가 독점해 온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전문기술관련협회 등 민간단체들도 직능원의 평가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갖출 경우 국가기관과 마찬가지의 공신력을 가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능원의 평가를 거친 일정수준의 학원, 사내대학, 기능대학 등 직업교육 훈련기관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 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수료와 함께 자격증 취득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와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직업교육훈련원에 관한 정책연구 · 개발, 직업훈련정책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자격제도에 대한 정책연구 개발 등의 사업을 병행 할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 직능원을 설립키로 했다.

## 레미콘 압축강도 100% 합격

레미콘에 대한 공시검사결과 최근에 들어서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압축강도 불량률은 없어졌다.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이 지난해 KS를 취득한 618개 레미콘공장 중 592개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시검사 결과 분석에 의하면 481개공장(81.2%)이 합격되었고 111개 공장은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불합격율은 강원지역이29.8% 대전 · 충남지역이 24%로 가장 많고 충북 23.7%, 부산 · 경남 20.5% 광주 · 전남 17.7% 대구 · 경북 16.1% 서울 · 경인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지역은 불합격이 없었다.

건자재시험연구원은 이 공시검사에서 골재의 품질검사, 계량오차 배합설계등 전문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공정관리 및 제품의 합격률이 동하중 94.4% 공기량 96.3% 슬럼프 97.1% 염화물량 99.8% 압축강도100%이며 원재료인 골재의 합격률은 굵은골재 95.8% 잔골재 91.9% 로 나타났다.

특히 콘크리트 압축강도 불량은 전무하며 원자재 수급의 애로, 수요자의 전문지식 부족,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공급, 열악한 중소기업 입지 등으로 기업생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레미콘 공장들이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건자재의 표준화 추진이 미흡하고 건자재 관련 시방 공급조건의 개선, 경영자의 품질의식 결여, 품질관리인원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국립기술품질원에서는 레미콘 공시검사 결과에서 불합격한 111개 공장에 대하여는 불합격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 서울공사현장 해사품질관리 시급

서울시내 고속도로등 대형건설공사장이 수도권의 강모래 수급난으로 인해 바닷모래 사용량이 크게 늘리고 있어 콘크리트의 품질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 제 87회 임시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현재 71곳에 이르는 주요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래가운데 바닷모래 사용량이 전체의 41.4%를 차지, 전국평균 25%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운 의원은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연한은 골재의 품질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바닷모래 반입현장에 관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서울시내 71개 공사현장 가운데 바닷모래는 22개 현장에서 33만4천$m^3$ 를 사용, 전체사용량(80만7천$m^3$)의 41.1%를 차지하고 6호선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의 일부공구는 사용률이 100%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 1996년도 건설공사 도급 순위 발표

건설협회는 96년도 건설공사 도급한도액 순위 를 아래표와 같이 발표하였다.

〔표〕 96년도 건설공사 도급한도액 순위표(1－100위)

(단위 : 억원)

| 순 위 | 회 사 명 | 도 급 액 |
|---|---|---|
| 1 | 현 대 건 설 (주) | 32,604 |
| 2 | (주) 대 우 | 27,486 |
| 3 | 삼 성 물 산 (주) | 26,305 |
| 4 | 동 아 건 설 산 업 (주) | 23,113 |
| 5 | 대 림 산 업 (주) | 14,957 |
| 6 | 엘 지 건 설 (주) | 13,810 |
| 7 | (주) 한 보 | 12,220 |
| 8 | 현 대 산 업 개 발 (주) | 11,965 |
| 9 | 쌍 용 건 설 (주) | 11,962 |
| 10 | 선 경 건 설 (주) | 9,150 |
| 11 | 삼 성 중 공 업 (주) | 9,116 |
| 12 | 포 스 코 개 발 (주) | 8,789 |
| 13 | (주) 금 호 건 설 | 8,444 |
| 14 | 두 산 건 설 (주) | 8,146 |
| 15 | 한 진 건 설 (주) | 7,819 |
| 16 | 한 국 중 공 업 (주) | 7,345 |
| 17 | 동 부 건 설 (주) | 7,046 |
| 18 | 현 대 중 공 업 (주) | 6,075 |
| 19 | 신 안 종 합 건 설 | 5,858 |
| 20 | 롯 데 건 설 (주) | 5,590 |
| 21 | (주) 건 영 | 5,464 |
| 22 | 한 라 건 설 (주) | 5,201 |
| 23 | 벽 산 건 설 (주) | 5,181 |
| 24 | 한 신 공 영 (주) | 5,048 |
| 25 | (주) 청 구 | 4,996 |
| 26 | 경 남 기 업 (주) | 4,932 |
| 27 | (주) 한 양 | 4,905 |
| 28 | (주) 우 성 건 설 | 4,736 |
| 29 | 삼 환 기 업 (주) | 4,598 |
| 30 | 극 동 건 설 (주) | 4,586 |
| 31 | 풍 림 산 업 (주) | 4,235 |
| 32 | (주) 기 산 | 4,144 |
| 33 | (주) 태 영 | 3,966 |
| 34 | 코 오 롱 건 설 (주) | 3,943 |
| 35 | (주) 우 방 | 3,862 |
| 36 | 삼 부 토 건 (주) | 3,603 |
| 37 | 고 려 산 업 개 발 (주) | 3,516 |
| 38 | 삼 성 엔 지 니 어 링 (주) | 3,505 |
| 39 | (주) 보 성 | 3,356 |
| 40 | 벽 산 개 발 (주) | 3,068 |
| 41 | 신 화 건 설 (주) | 3,056 |
| 42 | 성 원 건 설 (주) | 3,044 |
| 43 | 한 보 건 설 (주) | 2,992 |
| 44 | 신 동 아 건 설 (주) | 2,949 |
| 45 | 금 강 종 합 건 설 (주) | 2,836 |
| 46 | (주) 신 성 | 2,828 |
| 47 | 대 아 건 설 (주) | 2,645 |
| 48 | (주) 삼 호 | 2,568 |
| 49 | 두 산 개 발 (주) | 2,564 |
| 50 | 남 광 토 건 (주) | 2,523 |

| 순 위 | 회 사 명 | 도 급 액 |
|---|---|---|
| 51 | 고 려 개 발 (주) | 2,385 |
| 52 | 동 성 종 합 건 설 (주) | 2,355 |
| 53 | 일 성 종 합 건 설 (주) | 2,226 |
| 54 | 공 영 토 건 (주) | 2,216 |
| 55 | (주) 라 인 건 설 | 2,171 |
| 56 | 진 로 건 설 (주) | 2,169 |
| 57 | (주) 동 신 | 2,168 |
| 58 | 삼 익 건 설 (주) | 2,150 |
| 59 | 계 룡 건 설 산 업 (주) | 2,133 |
| 60 | (주) 대 동 | 2,117 |
| 61 | 효 자 종 합 건 설 (주) | 2,107 |
| 62 | 임 광 토 건 (주) | 2,091 |
| 63 | (주) 대 동 주 택 | 2,089 |
| 64 | 한 진 종 합 건 설 | 2,088 |
| 65 | (주) 신 일 건 업 | 2,087 |
| 66 | 화 성 산 업 (주) | 2,066 |
| 67 | (주) 신 한 | 2,031 |
| 68 | (주) 서 광 건 설 산 업 | 1,941 |
| 69 | (주) 삼 익 | 1,920 |
| 70 | 한 일 건 설 (주) | 1,900 |
| 71 | 국 제 종 합 건 설 (주) | 1,841 |
| 72 | 엘 지 엔 지 니 어 링 (주) | 1,838 |
| 73 | (주) 국 제 종 합 토 건 | 1,833 |
| 74 | 신 원 종 합 개 발 (주) | 1,807 |
| 75 | 금 광 기 업 (주) | 1,783 |
| 76 | 대 주 건 설 (주) | 1,717 |
| 77 | 한 라 중 공 업 (주) | 1,712 |
| 78 | (주) 한 화 | 1,666 |
| 79 | 한 솔 건 설 (주) | 1,657 |
| 80 | 범 양 건 영 (주) | 1,655 |
| 81 | 시 대 종 합 건 설 (주) | 1,651 |
| 82 | (주) 대 호 | 1,595 |
| 83 | (주) 삼 익 주 택 | 1,560 |
| 84 | 상 우 종 합 건 설 | 1,559 |
| 85 | 남 양 건 설 (주) | 1,548 |
| 86 | (주) 건 영 종 합 건 설 | 1,535 |
| 87 | 성 지 건 설 (주) | 1,529 |
| 88 | 삼 성 건 설 (주) | 1,511 |
| 89 | 삼 협 개 발 (주) | 1,510 |
| 90 | 라 이 프 주 택 개 발 (주) | 1,486 |
| 91 | 두 진 종 합 건 설 (주) | 1,461 |
| 92 | (주) 부 영 | 1,435 |
| 93 | 아 남 건 설 (주) | 1,404 |
| 94 | 대 산 건 설 (주) | 1,393 |
| 95 | (주) 동 양 고 속 건 설 | 1,378 |
| 96 | 진 흥 기 업 (주) | 1,376 |
| 97 | 동 광 주 택 산 업 (주) | 1,369 |
| 98 | 경 향 건 설 (주) | 1,347 |
| 99 | 자 유 건 설 (주) | 1,344 |
| 100 | (주) 미 도 파 | 1,328 |